

목회학박사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학박사원(이하 '박사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박사원은 목회자의 목회 지도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장소)

본 박사원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운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본 박사원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게 한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및 감사

제6조 (재정)

박사원의 재정은 위원회 지원금, 등록금,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재정)

재산의 관리는 위원회가 의결하여 처리하고 법규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계의 구분 및 집행)

회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회계는 박사원장이 집행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일반회계 : 교육사업
2. 특별회계 : 특별 기획사업

제9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위원회는 총회에 예산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감사)

박사원 운영의 감사는 위원회 감사와 총회 감사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박사원 동문대표 2인, 목회와신학연구소 이사 2인, 박사원장, 박사원 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임기)

파송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

운영위원회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에 보고한다.

1. 박사원의 예산과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4. 박사원 관련 제반 규칙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원회 감사)

위원회는 총회 감사 1개월 전에 자체적으로 박사원의 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는 위원 2인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며,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과 교직원

제19조 (조직)

박사원은 원장과 처장으로 조직하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처를 둘 수 있다.

제20조 (박사원의 장)

박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한국기독교총회로회에 속한 목사
2. Ph.D., Th.D.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academic degree)를 소지한 자
3. 박사원 교수 경력을 소지한 자

제21조 (부처 조직과 장)

1. 교무처 : 학사와 교무 업무를 관장한다.
2. 총무처 : 일반 행정과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3. 처장은 박사원 교수로 하여금 겸임하게 한다.
4. 처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교직원)

교직원의 구성과 임면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23조 (해산)

박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잔여재산의 귀속)

박사원을 해산하였을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 총회에 귀속된다.

제25조 (개정)

이 정관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3. 이 정관과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통상규칙을 준용하여 결의하며,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